

#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8년 11월 24일
- 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3일
- 라. 상정일자 : 제82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  
-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12월 22일)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오용수)

### 가. 개정 사유

- 소속기관이면서도 각각의 기구관련 조례·규칙을 분리 운영하고 있어 기구·사무 조정시 각종의 조례·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
- 행정자치부터 기구·정원관련 조례·규칙 통합정비지침이 시달되어 자치단체 간의 통일성을 기하고,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기구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코자 함.

### 나. 주요 골자

- 구본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(보건소 및 보건진료소, 동)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합  
⇒ 보건소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고,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는 설치근거규정 삭제
- 사무분장 조정 : (종전) 실·과 ⇒ (개정) 실·국  
⇒ 실·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이재천)

-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01조내지 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한 조례개정안으로
-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고, 기구 및 사무 조정시 각종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력을 낭비하고, 의회의 불필요한 조례심의를 간소화하여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설치관련 조례를 통합정비한 것임.
- 보건소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고,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조례는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구본청의 행정기구및 소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,
- 사무분장조정은 실·과에서 실·국으로 분장하고, 실과의 사무 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자 한 개정조례안이라 생각됨

### 4. 관련 법 규

- 지방자치법 제101~105조
-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

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9. 기타사항 : 없음

#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1998년 12월 22일

제안자 : 김선옥 의원 외 5인

## ■ 수정이유

- 업무분장사무 및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

## ■ 주요골자

- 제7조제2항10호에 (구청장 위임사무에 한함) 삽입
- 제11조(소관사무) “소속 직원”을 삭제

##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10호 중 “보건소 업무 지도·감독”을 “보건소 업무 지도·감독(구청장 위임사무에 한함)”으로 한다.

안 제11조1항 중 “소속 직원”을 삭제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7조(사회산업국에 두는 과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10. 보건소 업무 지도 · 감독</p> <p>11.~22.(생략)</p> <p>제11조(소관 사무) ①보건소장은 지역 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</p>	<p>제7조(사회산업국에 두는 과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보건소 업무 지도 · 감독(구청장 위임사무에 한함)</p> <p>11.~22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소관 사무) ①보건소장은 지역 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통할하고 지휘 · 감독한다.</p>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##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1조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장·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) ①구 본청의 실장·국장·과장과 소속기관의 보조·보좌기관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제2장 구 본 청

제3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정보통신실, 총무국, 사회산업국, 도시국을 둔다.

제4조(기획감사실) 기획감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구 행정의 종합기획·조정
2. 기구·정원 관리 및 사무의 배분
3. 자치구 의회운영 지원
4. 구 행정사무의 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
5. 정책개발 및 중·장기 발전계획 수립
6.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
7.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

8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폐·심사 및 공포
9. 행정심판·소송에 관한 사항
10. 구정 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

제5조(정보통신실) 정보통신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1. 행정전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각종 통계 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
3.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
4. 경영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
5. 지방공기기업의 설립 및 관리
6. 민자유치사업 진흥 및 총괄 관리

제6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총무국에 총무과, 지방세과, 회계과, 민원봉사과를 둔다.

②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1. 서무·보안·인사
2. 선거 및 국민투표
3. 동 행정 지도 감독
4.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
5. 민방위대의 조직·편성·교육·동원 및 시설·장비 관리
6. 전시인력동원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무
7.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보호 관리
8. 관광에 관한 사항
9. 세무행정의 종합 기획 및 추진
10.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구제에 관한 사항
11. 세입금 및 자금 수급 관리
12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
13. 공사도급,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
14. 물품의 조달·출납·보관
15. 청사 및 행정재산의 관리
16.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
17. 국·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처분
18. 구비, 시비, 국비회계의 총괄 및 지출원 업무

19. 문서 및 공인 관리
20.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
21. 주민등록·호적·인감업무 관리
22. 병무행정의 종합추진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
23. 구정 및 정부시책의 홍보

제7조(사회산업국에 두는 과) ①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, 환경위생과, 청소행정과, 경제과를 둔다.

②사회산업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구민 복지시책의 수립 및 생활보호
2. 노인·아동·부녀·장애인 복지 증진
3. 각종 사회복지법인·시설의 운영 및 지도·감독
4. 청소년 건전육성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
5. 환경계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
6. 공해방지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·단속
7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
8.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·신고 및 지도·감독
9. 묘지·매화장·납골당 관리
10. 보건소 업무 지도·감독(구청장 위임사무에 한함)
11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
12.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·감독
13.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
14. 가로·가정청소 관리
15.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
16.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
17.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18. 상공업·광업·시장·계량기·전기 등에 관한 사항
19. 농업, 축산 진흥 및 유통에 관한 사항
20.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
21. 고용촉진 및 노동단체의 지도육성
22. 각종 에너지(가스, 연료 등) 및 열사용 기자재 관리

제8조(도시국에 두는 과) ①도시국에 도시개발과, 교통과, 건설과, 건축과, 지적과를 둔다.

②도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1. 생활행정 및 생활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
2.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
3.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
4. 도시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
5. 도시공원 및 공원내 시설물 관리(시민공원 포함)
6.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, 수림에 관한 사항
7. 교통·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
8. 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인·허가
9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·징수
10.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
11. 노상·노외 주차장 관리
12.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13. 자동차등록(이륜자동차포함)에 관한 사항
14. 도로·하천·구거·공유수면 관리
15. 전문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
16.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·감독
17. 도로·하수도 개설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
18. 재해대책 및 재난예방 관리
19. 건축 허가 및 지도·감독
20. 공동주택사업 승인 및 지도·감독
21. 옥외광고물 관리
22. 지적공부 보존관리
23.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
24. 지적측량(이동지) 검사 및 정리
25. 지적 소유권 표시변경에 관한 사항
26. 건축물대장 관리 및 증명 발급
27. 토지거래규제 등 업무
28.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·감독
29.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

### 제3장 보건소·보건진료소

제9조(설치)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,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둔다.

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

제10조(소장 등)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,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.

제11조(소관사무)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통할하고, 지휘·감독한다.

②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

### 제4장 동

제12조(설치) ①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설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(직무)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발급, 통·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

제14조(동장) 동에는 동장을 두며,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“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”를 “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”을 “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소재지등)을 삭제하고, 제3조 내지 제17조를 제2조 내지 제16조로 한다.

②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“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”를 “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)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

별표의 제목“행정운영동의 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”를 “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”으로 하고, 동장 정수란을 삭제한다.

[별 표]

보건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9조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	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69-6	구 전 역
용두보건진료소	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275-3	용두동, 서창동
매월보건진료소	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460-8	매월동, 세하동